

#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664호
- 발 의 자 : 서윤기 의원(찬성자 42명)
- 발의일자 : 2020년 7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## 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‘문화소외계층’을 ‘문화취약계층’으로 함(안 제6조의2제1항제2호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5.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용어 중 하나인 ‘문화소외계층’을 ‘문화취약계층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〈신 · 구조문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
제6조의2(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)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 1. (생략) 2. <u>문화소외계층</u> 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6조의2(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문화취약계층</u>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1)에 따라 인권주류화,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,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2)를 도입·운영하고 있음3).
-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

1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 
 2) 인권영향평가(HRIA) :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
 법령, 계획, 정책,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 
 3)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(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, '19.4.)

860개(조례631, 규칙229)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,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,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(조례 57, 규칙5)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.

- 「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」 결과에 따르면 소외계층은 영어의 disadvantaged group 또는 marginalized group 등을 번역하여 사용된 용어로 최근에는 차별적 의미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취약계층(vulnerable group)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,

취약계층은 사회·경제적·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외적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차별적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대안용어가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 대신에 취약계층을 사용하거나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‘문화소외계층’을 ‘문화취약계층’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「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」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.
- 참고로 발의자인 서윤기 의원은 같은 내용 13건의 일부조례개정안(소외계층→취약계층)을 서울시 전 실국에 걸쳐 동시에 발의한 상황임.